

토론회 자료집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일시 | 2025년 11월 20일 (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목차

프로그램	3
발제1.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을 통해 본 사법농단 진상 / 유승익	4
발제2. 사법농단이 드러낸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사법개혁의 과제와 경로에 대해 / 서채완	20
토론1. “사법농단이 드러낸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사법개혁의 과제와 경로에 대해”에 대하여 / 김종철	28
토론2. 거시적이고 종합적 접근이 빠져 있는 사법·검찰개혁 / 오지원	34
토론3. 사법농단 사건은 최후에 어떻게 기록될까 / 이혜리	40
참고자료	44
1.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주요 경과	44
2. 사법농단 연루 법관 재판·탄핵·징계 현황	47
3. 김명수·조희대 대법원의 사법개혁 관련 주요 현황	54
4.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1심 재판 결과 요약	56

프로그램

- 13:30 사회 한상희 /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13:35 발제 유승익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명지대 객원교수 헌법학
서채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 14:25 토론 김종철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지원 /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변호사, 전 판사
이혜리 / 경향신문 주간경향부 기자
- 14:55 질의 응답
- 15:00 폐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을 통해 본 사법농단 진상

유승익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명지대 객원교수 헌법학

1. 들어가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1심에서 47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19고합130 판결, 이하 ‘1심 판결’)은 영욕의 대한민국 사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 중으로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희대의 사법농단에 대처해야 하는 사법부에게 자정(自淨)의 의지, 논리, 역량이 전무하다는 점을 판결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1,252일간의 지루한 공방 끝에 나온 이 판결은 여지 없는 ‘셀프 면죄부’이다. 사법부의 최고위층 법관들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름아닌 판결을 통해 사실상 면책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1심 판결 이후, 일각에서는 ‘사법농단의 실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옹호하기도 하였으나, 이 면죄부 판결이 사법농단의 진상을 모두 지워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 1심 판결은 “사법의 독립 포기 선언”(민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조직적 행위를 목인한 “제 식구 감싸기 판결”(참여연대)로 규정되고 또 평가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무죄 판결만으로는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법부 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법정치의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 발제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문에 기초하여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판부가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 및 공모공동정범 법리와 그 한계를 짚어보고, 사법농단의 진상과 구조를 살펴본다. 사법행정권이 사법부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행정부와 의 흥정과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사법부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그룹을 탄압한 행위는 단순한 비위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사법농단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2017년) 법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의 정책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재판들(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을 청와대나 행정부의 요구와 교환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에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던 판사들(국제인권법연구회, 서기호 판사 등)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현직 법관의 비위 사건(정운호 게이트, 부산고법 판사 비위 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1심 재판부가 정리한 개별 공소사실은 30가지에 달한다.

- I.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 II.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 III.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 IV.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 V.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 VI.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청와대를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시도
- VII.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법률신문 대필 기사 기재
- VIII.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 IX.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 X. 통진당 행정소송 대응 TFT를 통한 구체적 판단 방법 수립 지시
- XI.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 XII.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전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 XIII.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
- XIV.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 XV.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 XVI.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재판 개입
- XVII.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지시 및 재판 개입
- XVIII. 통진당 잔여재산 보전처분 검토지시 및 재판 개입
- XIX. 법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정당한 비판 및 독립된 재판 억압
- XX.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관련 직권남용
- XXI.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와해 시도

- XXII. 대한변협 등을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 검토 및 실행
- XXIII.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 XXIV.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개입
- XXV. 前 부산고등법원 판사 비위 은폐·축소 목적의 직무유기 및 재판 개입
- XXVI.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부분
- XXVII.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
- XXVIII.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 부분
- XXIX.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관련
- XXX.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관련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죄(47개 공소사실 중 41개에 적용)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법행정권자의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또한 법원 조직의 최고위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3. 직권남용죄 해석론

직권남용죄는 사법농단 사건에서 가장 많은 공소사실에 적용된 핵심 혐의였으나, 1심 법원은 이 혐의의 성립 요건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형식적 논리”이자 “법관국가적 사법”으로의 퇴행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¹

재판부는 재판사무의 핵심영역(현재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판단)에 관하여는 사법행정권자의 직무감독권 등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월권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이른바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법리이다.

이 형식논리를 통해 헌법적 가치인 법관 독립의 원칙은 (최소한 형사 처벌의 관점에서) 형해화되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헌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를

¹ 김성돈,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2020-11-17.

훼손하는 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가 단지 ‘직무권한 아닌 행위’(즉,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에 제외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용’은 권한 범위 내의 재량적 남용뿐만 아니라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남용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법원이 수사 및 감사 등에 지시하거나 관여한 고위 공무원에게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폭넓게 인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재판 개입에 연루된 고위 법관들에게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 잣대라는 비판,² 1심 법원의 해석은 법률의 해석보다 헌법의 해석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형법을 통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법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³도 있었다.

법원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사적 이익 추구나 불법 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작성한 여러 문건들(강제징용 시나리오, 전교조 반대급부 요청 등)은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보고서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정책적·정무적 관점에서의 검토”나 “내부 비공개 문건”, “정무적 성격의 내부 문건” 정도로 축소 해석하며 직권남용의 구성을 부정했다.⁴

특히,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의도하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서기호 판사 소송의 재판 신속 종결 요청처럼, 재판 개입 시도가 있었다더라도 해당 법관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이행하거나 ‘권리 행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된다. 이는 법원 고위층의 개입 시도 자체를 처벌할 수 없게 만들어, 사법 행정권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려는 조직적 구상을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원행정처의 심의관들이 재판 결과를 예측하고 정책적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임에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은 입법의 사각이 있음을 시사한다.

²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사법의 독립 포기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4-01-29.

³ 김성돈,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2020-11-17.

⁴ 1심 판결에 따르면,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도가 없음에도 단지 구체적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만으로 단순한 정책적·정무적 검토 차원에서 이루어진 내부 보고서 전부에 대하여 그러한 보고서의 작성 지시가 그 자체로 재판의 공정과 독립을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구조에서 관료화된 법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평가된다. 검찰은 이러한 조직적 대응 기조가 양승태의 방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공모 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방침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며 공모를 모두 부정했다.

재판부는 조직 내부의 지시-보고-승인 시스템을 무시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단순히 ‘추측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며 최상층부의 책임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⁵

4. 재판개입 및 거래 시도 사건

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및 외교부와 관계 개선과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조직적 이익을 위해 재판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 사건을 말한다.

(1) 사건 배경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2012년 대법원이 역사적 전환점이 된 판결을 내린 이후, 사법부와 행정부(외교부) 간에 심각한 입장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갈등은 이후 법원행정처가 각종 대응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판 절차에 관여하려 했다는 혐의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다.

미쓰비시중공업 및 신일본제철(現 신일철주금)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다.

⁵ [‘사법농단’ 1심무죄 양승태 항소심 징역 7년 구형...검찰과 충돌](#), 연합뉴스, 2025-09-03.

그러나 외교부는 이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다. 외교부의 핵심 논거는 해당 판결이 국가 간 조약인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제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외교부는 이러한 입장을 담은 내부 문건을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던 임종헌에게 전달하는 등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사법부에 재상고심에서의 신중한 판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장 관계가 본 사건에서 문제된 법원행정처의 각종 검토 및 대응의 시발점이 되었다.

(2) 법원행정처 보고서 작성 지시와 직권남용 여부

핵심 혐의는 법원행정처 고위직들이 소속 심의관들에게 강제징용 재판의 진행 방향에 대한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1) 초기 대응 보고서(2013년 9월 ~ 11월)

양승태의 방침에 따라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찬익 심의관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 후 판단’ 등 재판 절차와 결론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긴 위법한 보고서 2건(2013. 9. 30.자 보고서, 2013. 11. 8.자 보고서)을 작성하게 한 혐의이다.⁶

2013. 9. 30.자 강제동원자 판결 외교부 관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서는 ‘2013년 12월 전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는 1안과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 후 판단’하는 2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1안은 신속하지만 외교부와 관계 악화를, 2안은 외교부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외교부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기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① 법원행정처의 역할 한계 설명, ②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방안 검토(현행 규정상 불가, 참고인 의견서 제도 신설 검토), ③ 공개 변론 시 참고인 진술, ④ 피고 측 소송대리인을 통한 간접적 의견 제출 협조 등이 포함되었다.

2013. 11. 8.자 강제동원자 판결 검토 보고서는 기존 보고서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외국 송달이 지연되는 점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는 방안이 추가되었다.

⁶ 사법농단 판사가 남긴 흔적 "외교부가 오해할까봐..." [양승태 13차 공판] 박찬익 전 판사부터 증인 신문 시작... 강제징용재판 지연 정황 또 확인, 오마이뉴스, 2019-07-10.

법원은 해당 보고서 작성 지시를 재판에 개입하려는 구체적 실행 계획이 아닌, 대외 관계를 고려한 ‘정책적·정무적 검토’의 범주로 해석하여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 사법행정은 고도의 정책적 영역으로, 내부 보고서에 정무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내용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법원은 보고서 작성 지시가 재판에 개입하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외교부와와의 관계 악화 등 대외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정무적 검토’ 차원으로 보았다. 사건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은 초기 단계였고, 보고서가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 11월 8일자 보고서가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ICJ 제소 가능성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 제공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심리불속행 여부에 대한 검토 부분’이 삭제된 채 전달되었으므로, 재판 개입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 재단 설립 및 시나리오 검토 보고서 (2013년 12월)

임종헌이 박찬익 심의관에게 ‘미래 재단 보고서’와 ‘시나리오 축약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 보고서들이 향후 재판 전개 방향과 소멸시효 적용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혐의다.

법원은 ‘시나리오 축약 보고서’는 작성 지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013. 12. 18.자 미래 재단 보고서는 ① 재상고기각, ② 새로운 쟁점으로 파기환송, ③ 조정/화해 시도, ④ 사법자제론 채택, ⑤ 전원합의체 회부 등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시나리오 2’는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손해배상액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화해 내지 조정으로 종결함이 바람직하다”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상입법을 통한 해결’과 ‘소송 제기 피해자만 판결로 해결’ 두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보고서는 임종헌의 의종을 반영하여, 향후 소송 폭주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15년 5월경 완성)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해당 보고서 작성 지시 역시 ‘재판에 개입하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유로, 5가지 시나리오는

재판 개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아니라, 향후 재판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장단점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보고서 작성 당시 사건은 상고이유서조차 제출되지 않은 초기 단계였고,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된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재판 개입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청와대 및 외교부 입장 반영 보고서(2014년 11월 ~ 12월)

2차 소인수회의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임종헌과 박병대 前 법원행정처장이 각각 시진국, 김종복 심의관에게 '시나리오 보고서'와 '외교부 의견 반영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다.⁷

2014. 11. 10.자 시나리오 보고서는 외교부 내부 문건과 기존의 '미래 재단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배상판결 확정 시 예상되는 국가적 부담' 항목은 외교부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2014. 12. 13.자 외교부 의견 반영 보고서는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법적 방안을 검토한 문서였다.

재판부는 두 보고서 작성 지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부인하였다.

보고서들이 기존 내용을 요약·편집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외교부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보고서에 '(외교부 견해)'라고 명시한 것이 재판 개입 의도가 없음을 반증한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보고서 작성 지시가 구체적인 실행 목적이 아니라, 현황 파악이나 개인적 생각 정리를 위한 임종헌의 평소 업무 스타일일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외교부 의견 반영 보고서'는 특정 사건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법정조언자' 제도와 같은 일반적인 재판제도 개선 차원의 검토였다고 판단하였다.

4) 사법부 이익 관철 목적의 보고서(2015년)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의 숙원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거래 대상'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들('청와대 대응 보고서', '청와대 설득 보고서', '재외 공관 파견 보고서')을 작성하게 한 혐의다.

법원은 이들 보고서 작성 지시 또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보고서 작성의 주된 목적은 재판 개입이 아니라 '상고법원 입법 추진' 및 '법관 파견 재개'를 위한 설득 전략

⁷ [\[판사와 두 개의 양심\]② “재판결과 유출 왜 문제냐” 묻자...동문서답한 판사](#), KBS, 2019-04-20.

수립에 있었다는 판단이다. 강제징용 사건을 언급한 부분은 재판 거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아니라, 설득 대상인 이병기 비서실장 등의 관심사를 활용한 ‘아이디어 제안’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특히, 법원은 해당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삭제된 점을 재판 개입 의도가 없었다는 강력한 반증으로 삼았다. 또한 강제징용 사건 처리와 법관 파견 문제가 명확한 ‘급부 및 반대급부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3) 직접적 의견 전달 및 비밀 누설 혐의

1) 주심 대법관에 대한 의견 전달

보고서 작성 지시 외에, 피고인 양승태가 주심 대법관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거나 재판 계획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개별 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승태가 주심 대법관인 김용덕에게 ‘ICJ에 제소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에 대하여,⁸ 법원은 이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지만, 소부(小部)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직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행위는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권리행사방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용덕 대법관은 피고인의 발언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2012년 판결의 논리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재판권 행사가 실제로 방해받지 않았으므로 발언과 재판 지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2)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양승태가 임종헌과 공모하여, 강제징용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 공무상 비밀을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및 외교부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누설했다는 혐의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되었다.

임종헌이 피고 측 변호사 및 외교부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양승태의 구체적인 지시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직무상 비밀’을 외부로부터 유래한 구체적 사실로 엄격히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언급했다는 ‘전원합의체 회부’ 등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내심의 ‘추상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⁸ [단독]“징용 판결 日 제소 땀 국제분쟁” 양승태 ‘거짓 정보’로 재판 지연, 한국일보, 2019-01-07.

또한 피고인의 발언이 이미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거나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수준에 그쳐,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누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1) 공소사실 및 사건 배경

피고인들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이라는 사법부의 숙원 사업에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종헌 전 실장이 주도하여 작성된 ‘2014. 12. 3.자 전교조 보고서’는 이 재판의 결론 방향과 처리 시점을 대법원의 이익에 맞춰 조율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반대급부 요구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계획을 담고 있어, 이는 사법행정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본 사건은 1)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간의 공개적인 법적 공방 과정의 한 축과, 2) 그 재판을 둘러싸고 물밑에서 진행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간의 부적절한 소통 및 관여 정황의 다른 한 축으로 구성된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초기부터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사안이었다.⁹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부정적이었으나, 2013년 8월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처분을 직접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고용노동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결국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울고등법원의 1차 효력정지결정이 나오자 청와대는 재차 개입했다.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은 김종필 법무비서관에게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김종필 비서관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 요청에 따라 임종헌 실장은 심의관인 조원경에게 관련 법리 검토를 지시했고, 그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고용노동부의 재판 서면에 반영되었다.

1. 임종헌 실장, 조원경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2014. 9. 29.)을 김종필 비서관에게 전달
2. 김종필 비서관, 이를 참고하여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에 전달
3. 고용노동부, 형식적 수정만 거쳐 법원에 제출

⁹ [박근혜 정부 팩스 1장이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 판단은?](#), 한겨레, 2020-02-09.

4. 이후 김종필 비서관은 추가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전달했고, 이 역시 조원경 심의관의 다른 문건(2014. 10. 7.) 내용과 유사했음

이처럼 법원행정처가 특정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행정부를 위해 법리 검토 및 서면 작성을 지원한 행위는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극히 부적절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다.

(2) 전교조 보고서의 성격과 재판 개입

피고인들의 재판 개입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문건이 ‘2014. 12. 3.자 전교조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재항고 사건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 및 이익 확보를 위한 ‘정무적 카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보고서는 2014년 12월 2일, 임종현 실장이 정다주 심의관에게 직접 구체적인 내용을 불러주며 작성을 지시함으로써 만들어졌다. 정 심의관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임 실장의 지시 내용은 매우 노골적이고 전략적이었다.

- 처리 시점: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 직전, 그리고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기 전에 ‘재항고 인용 결정(고용노동부 승소)’이 이루어져야 대법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결론 방향: 재항고를 인용하여 1차 효력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청와대와 사법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분석했다.
- 반대급부 요구: 재항고 인용 시 청와대에 상고법원 추진 협조 등 반대급부로 요청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주목할 점은 이 보고서의 내용 중 본안 사건 처리 시점 관련 부분과 청와대 협조 요청 사항 중 일부는 보고서를 작성한 정다주 심의관이 직접 추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보고서 작성 이후에도 법원행정처는 다수의 내부 문건에서 전교조 재항고 사건을 중요한 ‘협상 카드’로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작성 시점	관련 사건	문건 내용
2025-01-18	최민호 판사 뇌물수수 사건	청와대가 사법부에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된 근거로 전교조 사건을 언급
2015-02-08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원세훈 유죄판결 시 청와대와의 신뢰 회복 방안으로 전교조 사건을 활용할 것을 검토
2015-03-15	이완구 총리 부정부패 선언	법원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으로 명시

2015-04-12	성완중 리스트 사건	청와대와의 우호 관계 유지 방안으로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건"으로 재차 언급
------------	------------	--

이러한 일련의 문건들은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재항고 사건의 법리적 타당성이나 사회적 파급력보다, 이를 어떻게 외부와의 관계에서 정무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몰두했음을 보여준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임종헌 전 실장이 정다주 심의관에게 ‘전교조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법원은 해당 보고서가 실제 재판에 개입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정무적 고려 차원의 내부 보고 목적’으로 작성된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보고서에 투입된 노력, 검토의 깊이 및 분량, 그리고 임종헌이 과거에도 유사한 ‘정무적 보고서’ 작성을 여러 차례 지시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 임종헌 실장은 대법원 재판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보고서가 주심인 고영한 대법관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또한, 보고서에 기재된 것처럼 보름 정도의 단기간 내에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재판 개입 의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 보고서의 내용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그 작성 의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은 정다주 심의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직무에는 조사·연구가 포함되며, 정 심의관이 보고서 내용 일부를 직접 추가하는 등 고유한 권한과 역할에 기초하여 직무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임종헌의 행위가 유죄라는 가정하에서도, 양승태·박병대 피고인이 이에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쟁점	검사의 주장	법원의 판단
----	--------	--------

고용노동부 서면 작성 지원	대법원장·처장의 정책적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매우 부담스러운 공식 요구에 대한 협조였다.	임종헌 실장이 자신의 판단하에 독자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정책 결정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전교조 보고서' 보고 여부	내용의 민감성과 파급효과를 볼 때,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작성될 수 없는 '보고용 문건'이다.	보고서가 반드시 상급자 보고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임종헌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할 목적으로 작성했을 수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보고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재판연구관에 대한 검토 지시	박병대 처장이 유해용 선임재판연구관에게 검토를 지시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재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판 개입이다.	박병대의 지시는 국회 답변 준비 차원일 수 있고, 양승태의 문제 제기는 순수한 학문적 의문 제기일 수 있다. 재판 개입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활용	대통령 면담을 위해 작성된 '2015. 7. 28.자 청와대 설득 보고서'에 전교조 사건이 언급된 것은 재판 결과를 거래 대상으로 삼았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는 이미 나온 판결 결과를 사후에 국정 운영 협력 사례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재판 거래의 증거로 볼 수 없으며, 양승태 피고인이 해당 보고서를 봤다는 직접 증거도 없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 간에 재판 개입에 대한 기능적 행위 분담이나 순차적·암묵적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1) 기초사실

임종헌은 원세훈 항소심 판결 선고 직전(2015. 2. 8.)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판결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보고서에는 유죄 판결 시 청와대 및 여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전교조 재향고 사건을 조속히 결정하여 청와대에 유리한 암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앞선 전교조 사건 보고서의 '반대급부 시나리오'가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사법 행정권이 개별 재판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재판들을 하나의 패키지 협상 대상으로 묶어 관리하려 한 조직적 행위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임종헌은 상고심 핵심 쟁점 분석 보고서(2015. 2. 9.자)를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보고서에는 '쟁점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상고심의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이라는 상고심의 쟁점 예상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다.

(2) 판단 및 평가

재판부는 이 사건 보고서 작성 지시의 주된 목적이 재판 외적인 환경에서 사법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공보 업무' 차원의 대응 방안 검토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상고심 쟁점 분석 보고서의 재판연구관실 전달에 대해서는 임종헌에게 재판연구관 업무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조사·연구 업무에 대해 직무권한이 없다는 논리로 직권남용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연구관의 독립성(법관의 독립성에 준하여 보호)을 침해한 행위의 위헌성을 도외시한 결과이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은 별개의 조직이므로, 사법행정권자가 재판 관련 보고서를 연구관실에 전달하거나 재판 방향을 암시하는 행위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재판부가 이를 ‘기록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으로 축소 해석한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한 행위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법관 독립 훼손 및 법원 조직 비위 은폐 사건

가.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사건

(1) 기초사실

서기호 판사는 연임부적격 결정(2012. 2.경) 이후 국회의원이 되어 상고법원 도입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입법부 인사였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당시에도 일선 법관들은 이를 대통령 비하 발언 등 정치적 행동을 단죄하려는 ‘법관 길들이기’ 수단으로 인식하며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서기호 의원의 소송(연임부적격 결정 취소 소송)을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국회 압박 전략으로 이용하려 했다. 법원행정처는 ‘본인의 재임용 탈락 다투는 행정사건 매개로 탄압·투사 이미지 표출 ⇨ 신속한 사건 종결로 국면 전환, 설득의 주도권 확보’라는 압박 전략을 문건에 명시하기도 하였다.¹⁰ 또한 임종헌은 재항고 종결 사실을 알게 되자 조한창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 박연욱에게 연락하여 소송의 신속한 기일 진행을 요청했다.¹¹

(2) 판단 및 평가

임종헌의 조한창에 대한 신속 종결 의견 전달 지시(2015. 5. 29.경)는 재판부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한창이 임종헌의 ‘신속 종결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¹⁰ [단독]검찰, 오늘 서기호 불러 ‘양승태 대법원’의 재임용 탈락·재판 관여 피해 조사, 경향신문, 2018-11-11.

¹¹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5)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 단어 뉘앙스 따져 묻는 그들”, 경향신문, 2019-11-14. 판결문은 비실명화 처리되어 있으나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실명을 밝혀둔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권남용죄 성립에 ‘결과 발생’ (의무 없는 일 이행 또는 권리 행사 방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와의 권한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조직적인 견제 방안을 강구했다. 양승태 등이 현재 파견 법관 최희준에게 현재 심리 사건과 추진 정책에 관한 비공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이규진, 문성호 등)에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¹²

재판부는 이규진의 최희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은 직권의 행사 및 남용에 해당하며, 최희준이 전달한 정보 중 일부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조직적 위법 행위가 실행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규진의 상급자인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공모는 부정하였다.

다.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및 은폐 시도 사건

법원행정처는 현재와의 권한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통진당 행정소송 사건을 도구화했다. 재판부는 임종현이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대응을 위해 TFT를 구성하여 특정 법리(현재 월권 지적)를 수립하고, 이를 일선 재판부(광주지법 행정1부 박강희 재판장 등)¹³에 전달하여 특정 방향으로의 판단을 유도하려 했다는 기초사실을 인정했다.

이민걸 차장이 광주지법 재판부에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전달한 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재판부 합의를 번복하고 판결 선고를 후임 재판부로 미루게 하는 등 실질적인 재판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통진당 지방의원 사건 관련 보고서 유출 사태(전주지법 공보사태)¹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했으나, 재판부는 허위 해명자료가 ‘문서로서 작성’되었다거나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

¹²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⑩\] 현재 파견 판사, 그는 정보요원이었다](#), 경향신문, 2019-08-27.

¹³ [양승태 재판개입 거부하고... 판결 지켜낸 소신 판사들](#), 한국일보, 2019-02-19.

¹⁴ [독립성 훼손된 재판, 선고 후 수정된 판결문 -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 19. ‘전주지법 공보사태’의 전말](#), 한겨레, 2020-04-05.

라.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사건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법리적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는 현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대법원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재판부는 임종헌 등에게 ‘재판 개입의 목적’이나 ‘직권 남용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마. 매립지 등의 귀속 사건

이 사건 역시 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재판 시기와 결론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행위 역시 재판 개입 목적이 아닌 ‘정책적, 정무적 협의’ 차원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을 부정했다.

바.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관련 및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와해 시도 사건

법원행정처는 인사모의 ‘자연 소멸’을 목표로 한 로드맵 문건을 작성했으며,¹⁵ 임종헌 전 차장이 심의관에게 지시해 인사모 와해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중복 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중복 가입 해소 조치’는 전문 분야 연구회 가운데 가장 늦게 설립되어 회원 수가 가장 많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임종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여 법관의 표현·연구의 자유를 침해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임종헌의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성립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고영한 전 대법관과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다.

¹⁵ 양승태 법원행정처, ‘인사모’ 폐지 로드맵까지 만들었다, 한겨레, 2018-05-27.

사.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인용)이 선고되자, 법원행정처는 이를 조직적으로 문제 삼았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9월 22일 작성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문건¹⁶에 해당 판결을 내린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김 판사의 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직무감독권 발동, 회피 및 재배당 등을 검토했고, 김 판사 사례를 토론 자료로 사용해 “하급심 판사들에게 일정한 시그널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김 판사는 실제로 인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은 사법 행정의 통일성을 강요하기 위해 일선 법관의 재판을 탄압하려 한 ‘법관 길들이기’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아. 법관 비위 은폐 및 수사기밀 수집 지시 등

‘정운호 게이트’ 및 ‘집행관사무소 비리’ 사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 및 서부지법 법관들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 조직 보호를 위한 위법한 정보 활동에 해당하며, 영장 재판 기록의 유출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재판부는 이를 사법 행정상의 ‘필요성’으로 정당화하여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관련 증거들이 기소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별건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¹⁶ ‘[긴급조치 국가책임 인정](#)’ 판결 후 양승태 사법부, “매우 부적절”, 중앙일보, 2018-07-12.

사법농단이 드러낸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사법개혁의 과제와 경로에 대해

서채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1. 사법농단사태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입장 및 권고

가. 법관과 법률가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혐의서한¹⁷ (2018. 11. 15.)

- 유엔 법관과 법률가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이하 “특별보고관”)은 2018. 11. 15. 한국 정부에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 AL/KOR 3/2018)을 발송하였음
- 특별보고관은 양승태 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이 행정권한을 이용해 특정 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사찰한 혐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 위와 같은 혐의가 헌법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제14조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였음

¹⁷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llegation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L KOR 3/2018

나.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정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¹⁸ (2023. 11. 24.)

-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 11. 24. 대한민국 제5차 정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로서 발표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에서,
- (1)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임명된 판사에게 사법권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3) 단 2명의 판사만 제재를 받았고 징계조치에 그쳤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
- 나아가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1)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고, (2) 판사의 선발, 임명, 정직, 전보, 해임 및 징계절차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며, (3) 사법권 남용이 효과적으로 조사, 기소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 제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

47. 위원회는 사법부 및 공직자 부패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임명된 판사들에게 사법권이 집중되어 있어 부패 수사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해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8명의 판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단 2명의 판사만 제재를 받았고 징계 조치에 그쳤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제2조, 제14조).

48. 당사국은 사법부와 검찰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고 이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판사와 검사의 선발, 임명, 정직, 전보, 해임 및 징계 절차가 자유권규약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및 ‘검사의 역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관련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모든 사법권 남용이 효과적으로 조사, 기소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 제재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 유엔 권고의 시사점

- 먼저 사법농단의 본질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자유권규약 제14조가 요청하는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특히 자유권규약 2조를 언급하였는데,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의 보장, 즉 재판개입 등에 대한 효과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강조하였음

¹⁸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5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CO/5, para. 47-48.

-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는 사법농단사태에 대해 (1) 책임을 묻는 것과, (2) 사법의 독립과 사법권의 남용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의 문제, 법원행정처에 의한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국가의 법적의무로서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2. 사법의 독립의 의미

가. 국제인권기준과 사법의 독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¹⁹는 모든 사람에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32호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 공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예외없는 절대적 권리라고 강조하며, 모든 형태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²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32호

19. 제14조 1항에서 의미하는 대로 재판소에 법적 권한, 독립성, 공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예외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독립성의 요건은 특히 판사 임명을 위한 절차와 자격과 연관되며, 법적 퇴직 연령이나 적용 가능한 재임 기한이 도달하기 전까지의 재임 안정성, 혹은 판사의 승진, 전보, 직무정지, 직무종료와 관련된 조건, 그리고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권이 갖는 실제 독립성에 관한 보장내용과 연관된다. 당사국은 특정 조치를 취해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판사의 임명, 보수, 재임기간, 승진, 직무정지, 면직을 비롯해 이들에게 부과되는 사법적 및 징계 조치에 관한 명백한 절차 및 객관적 기준을 수립한 법률 제정과 헌법을 통해, 의사결정 시 모든 형태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판사를 보호해야 한다. 사법부 및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감독하는 경우는 독립적인 재판소라는 개념에 위배된다. 이해관계의 충돌 및 위협으로부터 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 판사들의 독립성을 보호하려면, 판사의 재임 기간, 독립성, 안정성, 적절한 보수, 근무 요건, 연금, 퇴직 연령 등 판사의 신분을 법률에 의해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은 “사법부는 어떠한 집단으로부터도 또는 어떤 이유로든 직간접적인 모든

¹⁹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 또는 소송상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당사자들의 사생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정의에 해치게 될 특별한 사정 하에 법원이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는 언론 및 대중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또는 그 밖의 소송에서 선고되는 모든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달리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절차가 혼인관계 분쟁이나 아동 후견에 관한 절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²⁰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 General comment no. 32, Article 14,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fair trial, CCPR/C/GC/32, 23 August 2007, para. 19.

제한, 부적절한 영향, 유인, 압력, 위협 또는 간섭 없이 사실에 근거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외부 뿐만 아니라 법원 내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임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1. 사법부의 독립은 국가가 보장하며 그 국가의 헌법이나 법으로 명시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은 모든 정부 기관과 그 밖의 기관의 의무이다.
2. 사법부는 어떠한 집단으로부터도 또는 어떤 이유로든 직간접적인 모든 제한, 부적절한 영향, 유인, 압력, 위협 또는 간섭 없이 사실에 근거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결정한다.
4. 사법절차에 대한 어떠한 부적절한 또는 부당한 간섭도 없어야 하며, 법원의 사법적 결정은 수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사법 심사나 사법부가 부과한 형을 권한 있는 당국이 법에 따라 감경하거나 감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사법부의 책임성

- 국제인권기준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은 법관의 특권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판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시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21 22}

특별보고관 주제별 보고서 : 사법의 책임

59. 사법 독립의 원칙은 판사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법원 사용자에게 공정하고 공정한 심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법관은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여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법관의 의무는 법의 공정하고 공평한 적용입니다. 따라서 법관은 자신의 행동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통해 대중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사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 역사에서 사법의 책임을 묻는 것이 종종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독립과 사법의 책임은 독립을 올바르게 구축하기 위한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²³

²¹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nnual thematic report: Judicial accountability, A/HRC/26/32, para. 59.

²² Venice Commission, 'Report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l System, Part 1 : The Independence of Judges' CDL-AD(2010)004, Study No. 494/2008, para. 6.

²³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nnual thematic report: Judicial accountability, A/HRC/26/32, 2014, para. 51.

- 독립성은 책임성을 전제로 해야하고, 그렇다면 사법농단과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 등이 책임을 묻는 제도적 제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임
- 유엔 특별보고관은 사법부의 책임성과 관련한 주제별 보고서에서 모든 법집행자에 대해 개인책임을 묻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권고를 하였고,²⁴
- 나아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²⁵

개인의 책임

115. 개인의 책임은 모든 법집행자, 즉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경력수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과 구제를 받을 권리

130. 사법부와 사법시스템 전체에 대해 국가는 책임이 있다. 국가는 부당한 유죄 판결이나 기타 잘못된 사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해야 한다.

3. 사법농단과 사법개혁의 현황

가. 사법농단 이후 사법개혁의 경과

- 앞서 살펴본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국제인권기준의 사법의 독립에 관한 해석에 비추어보았을 때, 사법농단이 드러낸 것은 책임을 전제한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사법행정권 남용을 한 개별 법관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을 묻는 것 외에도, 그 원인이 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과 법원행정처의 문제, 불처벌을 조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절차의 부재,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의 부재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 사법발전위원회의 발족 등을 통해 큰 틀에서는 1)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윤리 책임성 강화, 2) 충실한 심리 재판제도 개선, 3) 법관인사제도 개편, 4)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 등이 개혁과제로서 논의가 되고 및 세부과제들이 수립되기도 하였음²⁶

²⁴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nnual thematic report: Judicial accountability, A/HRC/26/32, 2014, para. 115.

²⁵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nnual thematic report: Judicial accountability, A/HRC/26/32, 2014, para. 130.

²⁶ '법관인사 개편·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개혁 4대 과제 선정, 법률신문, 2017-11-14.

- 특히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주도하던 종래의 체제를 청산하고, 일선 법관과 재판 중심의 수평적·민주적 사법행정 체제로 법원을 개혁하겠다는 근본적인 개혁은, 제도 개선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태도, 지지부진한 국회의 법원조직법 개정, 한시적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내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함
-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 1. 9. 취임한 이후 기존에 도입된 제도들이 폐기되거나 형해화되었으며, 법원행정처의 원복,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등 법원 내부에서 추진된 각종 변화가 다시 이전 상태로 역행하고 있다고 보임

나. 최근 사법개혁의 논의

-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공언하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5. 10. 20. 5대 사법개혁안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한바 있음
- 그 내용은 1) 대법관 증원, 2) 대법관 추천위 개편, 3) 법관평가제도 개선, 4) 판결문 공개 확대, 5) 사전심문제 도입이며 이와 별개로 6) 재판소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²⁷
- 여당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긍정적 시도일 수는 있겠지만, 앞서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결여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025. 10. 27. 기존에 5가지 개혁과제에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를 추가해 7대 개혁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에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공식의제로 삼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음.²⁸ 다만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여당의 입장에 내부에서 갈리는 것으로 보임.
- 현재로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의제로 확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발표한 5대 과제로 보이는데, 중요한 의제들이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법원행정처 폐지, 즉 사법행정체계 개편이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사법개혁안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2025. 12. 9~ 11.까지 공청회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임

²⁷ 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대법관 14명→26명으로 증원, 한겨레, 2025-10-20.

²⁸ 7대 사법개혁 고삐 죄는 與...대통령 재판중지법도 만지작, 뉴스원, 2025-10-27.

-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청회의 주제는 상고제도 개편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국민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인 것으로 보임²⁹

4.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과제로서 사법위원회의 도입

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개혁

- 앞서 살펴본 사법농단사태 이후의 사법개혁의 경과와 최근 논의를 종합했을 때, 다양한 사법개혁의제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사법농단 사태로 드러난 사법행정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제는 주요과제로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법농단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원행정처의 구조임. 따라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분산시키는 사법위원회³⁰(Judicial Council)의 도입논의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함

나. 사법위원회 도입의 필요성

-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법원행정처가 아닌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법농단사태에서 드러난 것이고,
- 일부 학자들은 극단적으로 사법위원회의 도입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급진적이고 위험한 실험이라고 평가하거나, 현실에 맞지않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지만,
- 2018년 유엔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주제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70% 정도의 국가에서 사법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³¹
- 유엔 특별보고관은 위 보고서에서 사법위원회는 사법체계의 독립성과 개별 법관들의 독립성의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내지 개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³²

²⁹ [대법이 직접 여는 사법개혁 공청회...‘답정너’ 벗어날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5-11-09.

³⁰ 국내에서는 사법평의회, 사법행정위원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³¹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nnual thematic report: Judicial councils, A/HRC/38/38, 2018, para. 14.

³²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nnual thematic report: Judicial councils, A/HRC/38/38, 2018, para. 32.

다. 사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에 관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등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³³
 - 사법위원회의 핵심 목적은 사법의 독립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음
 - 사법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사법행정 전반의 업무로 인사, 예산, 그리고 징계 및 책임 절차를 담당하며,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의 자율성이 규정되어야 함
 - 권한의 과도한 집중과 폐쇄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기능중 일부는 별도의 독립기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구성은 판사를 구성원에 포함시키되, 폐쇄성(특권집단화)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현직 정치인, 정부나 국회 구성원은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외부위원의 선출은 비정치적 기관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부는 임명해서는 안 되며, 국회가 선출하는 경우 특별다수제 방식이 필요함
 - 사법위원회 구성에 성평등 관점이 필요함
 -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하고,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은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됨
- 사법농단 직후 국회에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³⁴들이 복수로 논의가 되었는데 위와 같은 기준들이 반영되었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5. 맺음말

- 사법농단사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한 남용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사항은 없다고 평가됨
-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많이 개편되어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타당한 평가인지 의문이 있음
- 지금 현재 논의되는 다양한 사법개혁과제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이상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기 어려울 수 있음

³³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nnual thematic report: Judicial councils, A/HRC/38/38, 2018, para. 89-112.

³⁴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59](#), [210145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2103726](#)),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2104341](#))

- 2017년 사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수직적, 중앙집중적, 폐쇄적 사법행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논의되었던 사법위원회의 도입이 결국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함

“사법농단이 드러낸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사법개혁의 과제와 경로에 대해”에 대하여

김종철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토론의 관점과 방향 : 사법개혁 필요성과 방향성 및 사법농단의 근본원인에 대한 거시적·종합적 인식의 필요성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행정 현안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그와 관련된 양승태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지지부진하였고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저해되는 제도적·문화적 환경이 지속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큼니다. 급기야 최근 시대착오적인 내란사태와 관련한 사법권의 대응은 실망을 넘어 국민의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파기환송이나 내란죄 피고인이 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황당한 구속취소 등 헌법 정신 및 사법정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법적 결정들이 이어지고 초유의 법원폭동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위협 의 현실화 등 사법불신이 매우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이후에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법규범과 사법현실의 심각한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더욱 공고해지기 위한 필요조건임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수 증원 등 매우 제한된 개혁과제에 집중되고 사법농단의 근본원인인 제왕적 대법원장제에서 파생되는 “수직적, 중앙집권적, 폐쇄적” 사법행정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개혁안에 대한 공론은 부족하다는 발제자의 진단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뒤늦게 이러한 방향으로 사법개혁의 조정되고 있습니다만 시민사회의 공론을 통해 사법개혁 논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발제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토론자는 발제자가 던진 화두를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더 보충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왜 사법개혁인가? :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진화에 대한 거시적 관점과 사법개혁

가. 사법농단 극복을 위한 사법개혁의 헌정체제적 배경

- 특수요인
 - 미완의 87년 민주화와 87년 헌법체제의 주요 한계
 - 제왕적 대법원장제 : 중앙집중형 사법행정
 - 사법권의 민주적 결핍 : 내부요인/외부요인
 - 비효율과 사법불신 – 소송폭발, 재판지연
- 보편요인
 - 정치의 사법화의 가속화
 - 현대법의 변화
 - 정보화(AI)/기후위기(지구법)/팬데믹(비상조치) 등으로 인한 전통법질서의 위기
 - 법의 복합화 및 다변화
 - 국제법의 헌법화

나. 사법개혁의 다차원성 및 복합성

- 헌법개정
 - 중앙집중형 사법행정 개혁

- 사법권 다원화 과제
- 국민참여재판, 판사회의 법정화 등 사법민주화
- 입법
 - 법원조직법
 - 소송법
 - 소송구조(사법접근권 강화)
- 문화혁신
 - 사법문화 – 전관예우 근절/법관윤리와 책임성 강화
 - 시민문화 – 사회적 갈등해소/남소예방

다. 누가 개혁의 주체인가?

- 규범적 차원 : 사법권 독립 v 사법의 책임성
 - 사법권 독립 – 자율적 개혁
 - cf.도대체 자율적 개혁의 사례와 성과 및 결과?
 - 사법의 책임성 – 사법행정권의 사법권에서의 분리
 - cf.외부적 통제만으로 사법의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가?
- 현실적 차원 : 사법의 정치화 v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

3. 어떤 사법개혁인가?

가. 사법개혁의 가치정향

- 기본적 인권 보장의 보루
- 민주공화제(민주적 법치주의)의 공고화
 - 법원 내외부의 민주화와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
 - 법원의 민주주의 제고 기능
- 좋은 재판(사법발전위원회 2019) -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쉽고 편안한 재판

나. 근본개혁과제 ① 중앙집중적 사법행정권의 개혁

- 제도의 현황 : 현행 헌법상 사법행정권의 대법원장 집중화

- 대법관 제청권
- 법관 인사권(대법관회의 동의)
- 중앙선관위원3인 지명권(중앙선관위원장사실상 지명권)
-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권
- 문제점
 - 비선출권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의 정당성 문제와 폐해 : 중앙집중적 사법행정
 - 도구적 사법행정(**instrumental judicial administration**)의 문제 :
진정사법작용이 행정작용인 사법행정에 의해 훼손=사법독립성의
훼손과 사법의 관료화
 - 법관의 행정참여나 국민에 의한 통제 등 민주적 결핍
- 대안
 - 분권화 : 의사결정/집행/정책연구 분리 및 상호독립 및 견제의 조화,
심급별행정분리와 자율성 강화
 - 민주화 : 의사결정에 법관참여 강화, 사법행정 외부통제 강화
 - 전문화 : 행정전문화, 법역전문화
- 사례 : 2019년 대법원 발전위원회
 - 사법행정회의 신설
 - 제1모델 :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총괄권을 사법행정회의가 대체하는
방안
 - 제2모델 : 사법행정회의에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
 - 쟁점
 - 헌법개정사항과 입법사항의 구분
 - 권한의 소재와 범위
 - 위원의 비율 : 법관위원과 비법관위원의 비율
 - 사법행정회의(위원장:대법원장) 산하 분야별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범위 및 방법
 - 결과
 -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2019)
 - 다시 사법개혁론? - 사법개혁은 대법원이 주도? 혹은 협의?

다. 근본개혁과제 ② 대법원 기능구조 개혁

- 문제의 원인
 - 대법원의 헌법적 위상에 대한 역할 인식 부재
 - 권리구제법원 v 정책법원 프레임의 한계
 - 헌법재판을 일반소송으로 인식하는 한계 ex) 선거범죄소송
 - 대법원의 소송폭발 :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4천건
 - 심리불속행제도의 한계
 - 법과 사건의 복합성 심화
- 문제의 결과
 - 국민의 권리구제 지연
 - 사법신뢰 저하
 - 입헌적 법치주의 훼손
 - 민주주의 역행
- 대안
 - 대법관 증원 – 대법관수 하한선 헌법 명기안
 - 상고제도 개혁
 - 대법원의 전문부설치 / 전문법원제 도입
 - 하급심 강화

4. 결론을 대신하여

좋은 발제로 ‘도구적 사법행정’이 횡행하여 사법의 독립은 물론 책임성을 훼손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환기하여 주신 발제자에게 감사드립니다. 토론자의 토론은 발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충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반복하여 정리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환기될 필요성이 있는 대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법권 독립은 그 자체로 자기목적적 절대 가치가 아니라 민주공화적 헌정의 토대를 이루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이며 민주공화정의 권력구조 형성의 원리와 체계적 조화를 이루어서 작동하는 관계적 가치입니다. 사법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할 때 그 독립의 가치 또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내세워 사법권을 마치 ‘금단의 성’처럼 성역화하고

어떤 민주적 개혁도 거부하는 듯한 태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법권과 사법행정권은 구별되어야 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볼모로 사법행정권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공화적 권력구성의 원리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파탄적인 사법현실은 오도된 사법권 독립의 미명하에 ‘도구적 사법행정’(instrumental judicial administration)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혁신책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오랜 숙제인 사법행정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하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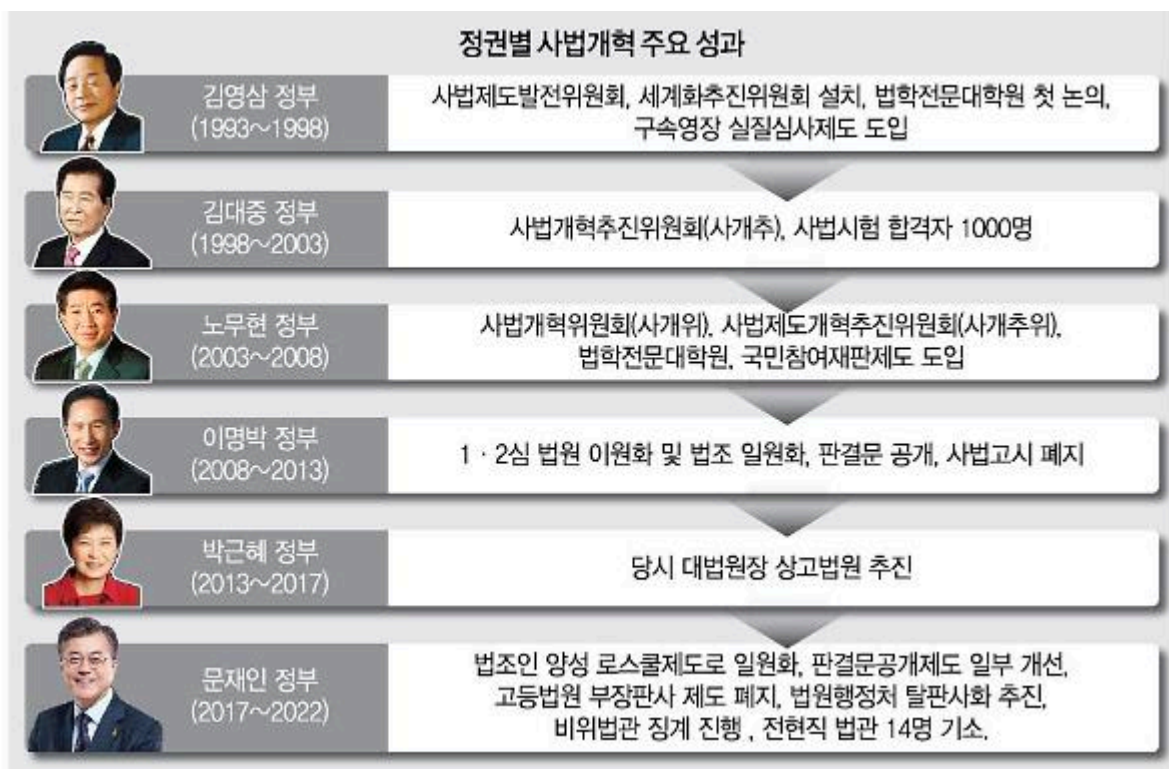
한편 사법권에 요청되는 민주적 대표성이 정치과정의 대표성과 동일한 것이 아니기에 사법개혁은 사법권 독립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사법 내부의 민주화와 분권화’에 의한 자율성이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신중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지 민주적 통제에만 급급하여 자칫 사법의 정치화를 과도하게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단순한 권리구제법원이 아니라 정책법원으로서의 헌법적 위상을 가지고 사법적 법해석재량을 활용하여 중요한 정책형성기능을 할 수도 있고 또 일정 사안의 경우 해야 할 의무를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법적 정치’(judicial politics)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복합성의 결과이기도 한 이러한 본질을 고려하여 정치권력과 다른 사법권력의 본질적 속성이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성 확보라는 민주공화제의 바람직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권의 헌법적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러한 역할 인식이 발휘될 수 있는 사법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특히 강조될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사법 행정 체계에서도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강화하여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의 과도화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면서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성 또한 균형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숙의적 방식’의 사법 행정 절차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할 시점입니다. 중요 사법 행정 정책의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에 숙의제가 도입된다면 전문성의 과대대표와 감성적·즉흥적 정책결정을 발전적으로 승화하는 바람직한 사법 행정 과정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개혁과제를 ‘선택과 집중의 원칙’ 및 ‘우선성과 보충성의 조화 원칙’에 따라 일정한 로드맵을 만들어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시적이고 종합적 접근이 빠져 있는 사법·검찰개혁

오지원 /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변호사, 전 판사

1. 역대 사법개혁 주요 성과



이미지 1. 정권별 사법개혁 주요 성과³⁵

³⁵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YS 때 시작해 노무현 때 속도…文정부는 '검찰개혁' 몰두, 아주경제, 2021-07-19.

기존 사법개혁 성과들은, 법조인 양성방식의 변화를 통한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권 강화, 판결문 공개를 통한 국민들의 알권리 강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한 사법감시 및 참여권 실현 정도에 머물러왔다.

위 기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발견된 사법제도 허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였고 당시 김영수 대법원장은 △판결문공개제도 일부 개선 △고법부장판사 제도 폐지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추진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법농단 관련한 뚜렷한 개선책이 마련되었는지 전혀 체감되지 않고 있다. 사법불신과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은 여전하다.

2.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안과 한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안들은 사법농단 관련한 교훈이나 오랜 사법불신에 대한 해법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안들이 매우 미시적이고 특정 상황에서 드러난 검찰, 법원의 권한남용의 해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다 검찰, 법원의 내부 반발 역시 제대로 조율·조정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죄판결에 대한 존중 및 불필요한 항소·상고의 남발을 막자는 것은 원론적으로 타당하지만, 피해자가 있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관점과 입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 이렇듯 몇몇 정치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미시적 관점으로 사법개혁에 접근하는 이상 설득력과 추진력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너무나 오래되고 견고한 상태로, 현재 제시된 ▲대법관 증원, ▲대법원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재판중지법이 그런 불신을 사법신뢰로 바꿀 만한 것들일까. 턱없이 부족하고 초점도 맞지 않다.

물론 한겨레의 사설³⁶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내란으로 헌정이 파괴될 위험에 처했는데도 헌법 수호 책임의 한 기둥인 사법부가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실정법을 뒤엎는 법 해석으로 석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 지연, 비공개 재판 등 공정성과 엄정함을 의심케 하는 일이 지속됐다. 또 계엄과 관련해 “어떤 문건도 받지 않았다”던 한덕수 전 총리의 거짓말이

³⁶ [사설] 사법부, ‘사법 불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먼저 성찰해야, 한겨레, 2025-09-15

드러났는데도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국민들은 과연 사법부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건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된 점' 등 윤석열 정권의 내란 상황을 제대로 청산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사명일 수 밖에 없고 그 부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사법불신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방안들은 이재명 정부 때만 시행되는 것들이 아니다. 향후 수십년을 내다보고 개혁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간 쌓이고 쌓인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3일 여당은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한다고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내용도 대장동 판결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집중되었고 그 이름에 걸맞은 '사법불신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방안들은 전혀 담아내지 못하였다. 이런 여당의 태도는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다.

정치적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과 법원의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포함하되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인권 및 권익 향상을 제1의 목표로 삼아 거시적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방안들로 채워져야 한다.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TF가 아닌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법원과 검찰이 반발하는 것을 무조건 항명 내지 적폐세력의 저항으로 치부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고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 사회의 사법불신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새삼스레 기사를 원용하는 것이 머쓱할 정도로 오래되고 견고한 문제다. 이는 특정 정치 사건들에 있어 검찰과 법원이 보인 태도만으로 촉발된 것은 아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7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여러 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15~29세 청년 64.8%가 정부를 믿지 않는다고 보도했다.³⁷ 이는 FT가 분석한 30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이고, 사법 체계를 믿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59%로 그리스(6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한다.

³⁷ [Young Americans lose trust in the state](#), Financial Times, 2025-03-17.

이러한 결과는 거의 매일 같이 언론에 보도되는 ▲미흡한 처벌 문제, ▲피고인들의 권리 대비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 미흡, ▲국민의 법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 ▲재판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부족, ▲사법농단 및 조희대 대법원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정권과의 유착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주요 내용 제안

가. 미흡한 처벌 및 피해자 소외 등 부정의의 문제

-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및 취약증인 인권 및 보호방안 강화와 실질적인 참여권, 소통 강화 방안 마련
 -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
 - 기록열람등사권 및 수사기록 증거개시
 - 재판 참여 및 진술권
 - 판결문을 교부받을 권리
 - 양형심리에 의견반영
 - 민사사건에서의 사생활 보호 등
-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 검찰의 위상 과 역할 재정립, 피해자와의 소통역량 및 공판기능 강화로 피해자 및 공익의 대변자 역할 및 억울한 무죄 방지
-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현실화 및 강제집행 절차 간이화 방안
- 판검사에 대한 피해자 인권 및 취약증인 관련 교육, 훈련 실시
- 판검사에 대한 교육, 훈련체계 및 내용 마련에 있어 시민사회 등 참여
- 회복적 사법 기능 도입하여 실질적 화해, 사과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추구
- 양형요소에 관한 형사소송법 및 양형기준 개정
- 피해자 지원 제도 실질화 및 보강

나. 국민들의 알권리 및 공익 목적 연구 활성화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및 검색 시스템 개선
- 범죄 예방,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연구, 분석에 협조 강화

- 녹음녹화 및 중계 범위 확대
- 사건 배당의 무작위화 및 공개
- 피고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다. 검찰 및 사법 독립성 강화

- 법원행정처 폐지 내지 행정처 내부 판사 배치 제한, 행정처 권한 분산
- 법무부 권한 분산 및 검사 배치 제한
- 법관 및 검사 징계절차 투명화
- 인사위원회 구성시 시민, 전문가 참여 확대
- 예산 편성의 독립성 제고

라. 사법접근성 확대 및 신속, 공정한 재판 보장

- 피해자 및 피고인 국선변호 확대, 법률지원 강화
- 판검사 숫자 현실화
- 민형사 재판의 형식화 및 지연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마. 교정 및 소년 사법 개혁

- 실질적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전면개선 및 검찰, 법원과의 협업 강화
- 학교폭력 등 소년 사법에서의 피해자 권리 강화
- 회복적 사법 기능 도입하여 실질적 화해, 사과 등을 통한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유도

사법농단 사건은 최후에 어떻게 기록될까

이혜리 / 경향신문 주간경향부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기준으로 검찰이 기소를 한 지 6년 10개월, 2심에 사건이 올라간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2심에서 총 7번 재판이 열렸습니다. 2심에서는 각 쟁점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측이 입장을 설명하고 증인신문 1명을 한 것 외에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을 받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지만 재판을 방청했을 때 법정이 텅 비어있을 정도로 일반 시민과 언론의 관심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끈질기게 분석한 언론보도도 최근엔 살펴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1. 왜곡된 프레임

2017년 3월 사법농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왜곡된 프레임 속에서 다뤄진 것이 이 사건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을 크게 방해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형사재판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유무죄’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됐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서 발생한 법원행정처의 법관 독립 침해 행위는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과 꼭 연결짓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제제기할 만한 것들이었지만, 그러한 본질적인 내용은 주되게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형사재판의 까다로운 절차와 범죄 성립 요건들, 1심 재판부의 온정적 판단으로 인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일각에선 이 1심 결과를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를 아예 부인하는 근거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왜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보다는, ‘무죄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논의가 귀결 됐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선고에서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던 사법농단이나 재판 거래에 관한 중대한 의혹들은 대부분 실체가 사라진 채 공소장에는 보고서 작성 지시 혐의들만이 주로 남았다”고 말한 것은 사건 의미를 축소하고,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 대표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럼에도 법원행정처에서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한 재판부에 직권취소 및 재결정 의견을 전달하고, 매립지 귀속 분쟁·판사 비위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선고 시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현재 내부 사건 정보·동향 수집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에 대한 특정 법리 전달, 심증 확인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의 결과로서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고 평가합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정도를 제외하곤 법제화된 게 없습니다. 김영수 대법원장 때 많은 시간과 인력을 들여 사법개혁안을 도출했지만 제도적으로 안착시키지 못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그나마도 대부분 다시 되돌렸습니다. 김영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의미에 대해 몰랐던 것인지, 모른 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은 퇴행했고,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법행정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그 산하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한 것이 사법농단 사건이라면, 이재명 판결은 대법원이 스스로 재판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결은 조금 달랐지만 둘 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에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와 관료화 문화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사법농단 사건과 구조적 토대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만 거론되면서 사법개혁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법개혁이 시행되더라도 그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농단 사건의 의미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을 어떻게 다양화할 수 있는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이전에 어떻게 법원에서 공정한 사무분담을 위한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는지 등의 근본적인 논의도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은 과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와 수직적 사법행정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온 반면 수평적 사법행정이나 사법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제시한 것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직후부터 정치권에서 사법개혁 주장을 쏟아낼 때도 대법원은 별다른 설명이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9월 1일에야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법원 내부통신망에 의견수렴을 해달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법원장 게시판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법원행정처가 민주당 쪽에 법원행정처의 검토 결과를 제출한 때로, 법원행정처가 먼저 검토 및 입장 정리를 한 뒤 판사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 내부 검토만 했을 뿐이고 신속하게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해명했지만, 과거의 수직적 사법행정을 드러낸 장면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 무책임한 정치권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때 수사가 이뤄진 사법농단 사건도 덩달아 그 의미가 축소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는 초기부터 사법농단 실체를 부정해 온 일부 보수진영 뿐 아니라 당시 직접 수사를 담당한 당사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심 무죄 이후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라며 책임 회피적 발언), 검찰 비판에 열을 올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납니다. 검찰 비판이라는 지점에서 서로 대척되는 진영의 사람들이 맞닿기도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어느 현직 검사가 검찰에 실망하고 조직을 떠나면서 한 말”이라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사직 때 입장을 인용한 것이 그 예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범위가 엄청나게 커졌고, 47개라는 방대한 공소사실로 기소를 했습니다.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집중도도 떨어졌습니다. 재판 초반엔 수사팀 검사들이 대거 참여해 직접 공소유지를 했지만 점점 검사들이 바뀌고 그 수도 줄면서 검찰의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비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필요도 분명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권력과 재판을 거래하고,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식의 사법행정이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1월 18일 판사회의 실질화를 포함한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TF는 판사회의가 자문기관이 아니라 당해 법원의 사법행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 실질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요한 사법행정 이슈를 논의하는 창구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이후 법관회의가 관련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토론을 하고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 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법원 바깥에서 이재명 판결로 난리가 난 것과 달리 법원 내부에선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였고(일부 판사들의 공개 비판 글 몇 건을 제외하면) 법관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의결하는 것 또한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업무로 인해 너무 바쁘기 때문이든, 무관심하기 때문이든 법관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역할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사법행정 사안을 논의하기보다는 민원 창구가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기구를 법제화했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특히 앞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 후 철회된 상황에서 개별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사법행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이 어떤 형태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고민했으면 합니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민주당 쪽에 제출한 검토 결과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다양성 확보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천거 과정에서 심사에 동의하는 비법관 법조인이 극소수이기 때문”이라며 “최근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재야 출신 법조인 및 교수의 수가 매우 적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진행된 대법관 제청에서 법관이 아닌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는 2~5명이었고, 그중 교수는 0~1명, 법관,검사 경력의 없는 법조인은 0~2명이었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취재할 때마다 ‘풀이 너무 적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회 구성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위원장을 위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등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 대법관 천거 단계에서부터 비법관 출신을 최소 5명, 여성 비율을 절반 이상 할당하는 방안(법관회의 분과위원회 제시 안)에 공감합니다. 다만 심사동의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다양한 대법관 후보군을 발굴할 수 있는지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벌어진 직후 법조계에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사법개혁은 이뤄진 게 없고, 이 사건의 의미와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만 많아진다면 또다시 사법농단 사건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건은 3년 9개월째 심리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부터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후퇴까지³⁸

1.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주요 경과³⁹

- 2017년 3월 판사 뒷조사 문건 의혹 언론보도로 사법농단이 처음 알려짐.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학회 와해를 시도하며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이를 거부한 이탄희 판사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의혹이었음.
- 사실이 알려지고 비판이 거세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는 조사하지 못해 ‘셀프조사’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이후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이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해 분류하고, 단독판사회 의장 선거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함. 그러나 이 역시

³⁸ 참고자료는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2024.04.04.\)](#), 각종 보도자료, 언론보도, 국회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³⁹ 자세한 사건 경과는 참여연대 검찰감시 DB <그사건 그검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2018\)](#) 참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등을 확인하지 못해 실제 관여한 법관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실제 규명에 한계를 가짐.

- 이에 참여연대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2018년** 시민 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함. 같은 해 김명수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3차 조사에 착수했고, ▲법관 사찰, ▲박근혜 청와대와의 판결 거래 시도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조직적 사법농단 정황을 공식 확인함. 이 조사를 계기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이후 **2018년** 검찰 수사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는 등 전·현직 법관 **14명**이 기소됨. 하지만 주요 피의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권순일·차한성 전 대법관 등은 제대로 수사-기소하지 않고 현직 법관 **66명** 비위사실을 대법원 통보해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함.

날짜	주요 경과
2017-03-06	경향신문,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로 발령받은 한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 와해시키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 제기
2017-04-18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책임은 있으나,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사 보고서 발표
2017-05-02	참여연대·민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 요구 등에 관한 공개의견서 제출
2017-5~6월	내부제보실천운동,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양승태 대법원장·고영한 법원행정처장·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
2017-06-28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 수용 불가 표명
2017-9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 퇴임(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5일)
2018-01-22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 사법행정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조사 보고서 발표
2018-01-29	참여연대, 시민고발인단 1,080명 과 함께 법관 사찰 문건의 책임자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
2018-02-01	법학교수 및 연구자 120명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 등 무효죄로 고발
2018-05-25	법원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3차 조사 결과 발표 ▲ 양승태 법관사찰 인정,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고 발표, ▲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특정 시국판결들을 빌미로 청와대와 거래 시도한 정황, ▲ 대법원판결과 배치되는 판결 내린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 검토 사실, ▲ 국정원 선거개입 혐의 관련 원세훈 전 원장 재판 관련 청와대와 긴밀히 교류했음이 드러남

날짜	주요 경과
2018-06-01	참여연대, 특별조사단이 열람한 410개 문건 중 비공개된 404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이후 비공개 처분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함(6/28)
2018-06-15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관련된 법관 13명을 징계 조치에 회부했고, 자료들은 영구 보관 조치했다고 밝힘
2018-06-26	대법원, 410개 문건 검찰에 이관. 그러나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외되었으며, 양승태와 박병대가 사용했던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으로 파기된 것이 확인됨.
2018-7월	검찰, 대법원 내에서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고, 디가우징된 양승태와 박병대 PC 하드디스크 넘겨받아 복원작업 진행함.
2018-11-14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기소
2018-11-19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탄핵 공감 결의
2018-12월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3일), 법원, 구속영장 기각(7일)
2019-01-15	검찰, 임종헌 재판 개입(국회파견 판사를 통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민원을 받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해 외압한 혐의)로 추가 기소
2019-1월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18일), 법원,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24일)
2019-02-11	검찰, 양승태 구속 기소, 고영한·박병대 불구속 기소, 임종헌 추가 기소
2019-03-05	검찰,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 현직 법관 66명 비위사실 대법원 통보
2021-02-04	국회(이탄희 의원 등 161명 발의),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2021-10-28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 심판 각하 결정.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탄핵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
2021-10-14	유해용 무죄 확정. 대법원, 검찰이 수집한 증거 대부분이 영장 범위를 넘는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기각했고, 나머지 증거로는 범죄의 입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
2021-11-25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 대법원, 상고기각
2021-12-30	이태중 무죄 확정. 대법원, 상고기각
2022-01-27	이민걸 벌금 1,500만 원, 이규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상철·방창현 무죄 선고받음(2심)
2022-04-28	임성근 무죄 확정. 대법원, 재판개입 월권이나 위법은 아니라고 판시
2024-01-26	양승태·박병대·고영한, 무죄 선고받음(1심)
2024-02-05	임종헌, 일부 유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1심)
2025-11-27	임종헌, 2심(서울고법 형사12-1부, 2024노513) 선고 예정

날짜	주요 경과
2026-01-30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심(서울고법 형사14-1부, 2024노480) 선고 예정

2. 사법농단 연루 법관 재판·탄핵·징계 현황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을 징계조치에 회부하지만 5명(2명 불문, 3명 무혐의)은 징계를 피했고, 징계처분을 받은 나머지 법관들 대부분도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 최고 수위에 한참 못 미치는 정직 6개월~견책 처분을 받음. 검찰 사법농단 수사팀(서울중앙지검)은 사법농단 연루된 전·현직 법관 66명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법원에 통보함.(2019.03.05.) 그러나 대법원은 자체조사 후 (2019.05.09), 연루 법관 66명 중 10명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검찰이 통보한 비위사실 중 상당 부분(66명 중 32명)이 징계시효 3년이 이미 도과해 징계대상조차 되지 못했음. 그마저도 징계위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기약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성창호·신광렬·조의연은 무죄 확정 판결(2021.11.25.) 후 무려 2년 7개월만에 징계절차가 재개됨. 나머지 7명에 대한 명단 및 구체적 징계 내용은 “법관의 사생활”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음.
- 검찰 사법농단 수사팀(서울중앙지검 팀장 한동훈 3차장)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소(2018.11.14.)를 시작으로, 양승태·고영한·박병대 기소(2019.02.11.), 이민걸·이규진·신광렬·임성근 등 10명 불구속 기소(2019.03.05.)돼 총 14명이 재판을 받게 됨. 그러나 이중 단 한 명도 사법농단이라는 중대 사안에 걸맞은 엄벌을 받지 아니함. 6명(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이태종·유해용)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선고받음. 사법농단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를 비롯 고영한·박병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이 있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함.
-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2021.02.04.)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함(2021.10.28.). 임성근이 이미 법관에서 퇴임(2021.02.28.)했기 때문에, 공직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 참여연대와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16명 중 임성근을 제외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사람이 없음.
-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로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 조한창은 로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2025년 헌법재판관(국민의힘 추천)으로 영전함. 사법농단 관여 법관 대부분이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 중임. 사법농단 관여자들에 대한 처벌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줌.

- 이에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거나, 시민사회 탄핵명단에 포함되었던 총 31명 법관의 당시 직책 및 현 직책, 혐의를 비롯해 재판, 탄핵, 징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이름	당시 직책	이후 경력 및 현 직책 (2025.11.12. 기준)	혐의	형사 재판 경과	탄핵 경과 ⁴⁰	징계 경과
양승태	대법원장	· 2024-현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고문변호사 · 2017 대법원장 임기만료 퇴임	참고자료4 참조(56p)	· 2019.02.11. 구속기소 · 2024.01.26. 1심 무죄 · 2026.01.30. 2심 선고 (예정)	-	-
박병대	대법관 · 법원행정처장 ('14-'16)	· 2022-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0-22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 2017-18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 · 2017 대법관 임기만료 퇴임	참고자료4 참조(56p)	· 2019.02.11. 불구속기소 · 2024.01.26. 1심 무죄 · 2026.01.30. 2심 선고 (예정)	-	-
고영한	대법관 · 법원행정처장 ('16-'17)	· 2025-현재 법무법인(유) 바른 대표변호사 · 2021-25 법무법인(유) 바른 구성원변호사 · 2020-21 법무법인 율우 고문 변호사 · 2018 대법관 임기만료 퇴임			-	-
임종현	법원행정처 차장	· 2022-현재 법무법인 상양 대표변호사 · 2022 법무법인 오늘 고문변호사 · 2017 사의 표명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측 소송자료 검토, △ 홍일표 전 의원 형사재판 전략 수립, △ 통진당 의원 제소 방안 검토 지시, △ 강제징용 손배소 관련 외교부 의견서 감수, △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가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 2018.11.14. 구속기소 · 2019.01.15. 추가기소 · 2019.02.11. 추가기소 · 2024.02.05. 1심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025.11.27. 2심 선고 (예정)	-	-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 2024-현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 2023-24 변호사 권순일 법률사무소 · 2020-21 연세대 법전원	△ 법관 해외파견 대가로 강제징용 소송 선고 지연, △ GM 통상임금 선고 관련 청와대와 사전 모의한 혐의	-	2018 시민사회 탄핵명단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음	-

⁴⁰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소추안 공개\(1차\)](#)(2018.10.30.) &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2019.01.31.)

이름	당시 직책	이후 경력 및 현 직책 (2025.11.12. 기준)	혐의	형사 재판 경과	탄핵 경과 ⁴⁰	징계 경과
		석좌교수 · 2017-20 제20대 중앙선관위원장 · 2020 대법관 임기만료 퇴임 · 2014-20 대법관				
김민수	법원행정처 기획제1·제2 심의관	· 2021-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1 퇴직 · 2018-21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 2017-18 서울중앙지법 판사	임종헌 지시로 △ 상고법원 반대 칼럼 투고한 차 모 판사 동향파악, △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개입한 혐의	-	2018 시민사회 탄핵명단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음	2018.12.17. 감봉 4개월 2019.01. 징계불복소 송 (사건진행중)
김봉선	서울중앙지 법 기획법관	· 2021-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1 명예퇴직 · 2019-21 수원지법 부장판사 · 2017-19 광주고법 원외재판부 (전주) 판사 직무대리	임종헌 지시로 단독판사회 동향 수집 및 의장선거 특정 후보 당선 저지 대책 마련. 해당 후보 당선 후 보고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전달한 혐의	-	-	2018.12.17. 무혐의
김연학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	· 2023-현재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부사장 · 2021-23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21 임기만료(재임용 불희망) · 2021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 문건 작성 혐의	-	-	2018.12.17. 불문
김종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심의관	· 2019-현재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2019 퇴직 · 2017-19 광주지법·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 2015-17 서울중앙지법 판사	통진당 소송 개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통진당TF’ 간사 역할,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문건 작성	-	2019 시민사회 탄핵명단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음	-
나상훈	법원행정처 기획제1·제2 심의관 → 서울서부지 법 기획법관	· 2025-현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2022-25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2019-22 수원지법 부장판사 · 2017-19 대구지법·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양승태 사법행정예 비판적 법관 사찰, 대한변협 압박 방안 수립 및 시행, 법관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저지를 위한 수사정보 수집 및 유출	-	2019 시민사회 탄핵명단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음	-

이름	당시 직책	이후 경력 및 현 직책 (2025.11.12. 기준)	혐의	형사 재판 경과	탄핵 경과 ⁴⁰	징계 경과
노재호	법원행정처 인사제1·제2 심의관	· 2023-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3 명예퇴직 · 2020-23 광주지법 부장판사 · 2019-20 서울남부지법 판사 · 2017-19 서울고법 판사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 문건 작성 혐의	-	-	2018.12.17. 불문
문성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심의관	· 2021-현재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2021 퇴직 · 2020-21 대구지법·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 2019-20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규진 지시로 통진당 의원 행정소송 상 고심을 전합 회부 여부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이규진에게 보고한 혐의	-	2019 시민사회 탄핵명단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음	2018.12.17. 견책 2019.01. 징계불복소 송 (사건진행중)
박상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심의관	· 2025-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2021-25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 2018-21 창원지법 부장판사 · 2016-18 서울동부지법 판사	△ 임종현 지시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견제방안 검토 문건 작성, △ 법관 익명 카페 운영 개입한 혐의	-	2018 시민사회 탄핵명단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음	2018.12.17. 감봉 5개월 2019.01. 징계불복소 송 (사건진행중)
방창현	전 주지방법 원 부장판사	· 2025-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1-25 수원지법·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 2018-21 대전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요구로 통진당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 당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2019.03.05. 불구속기소 · 2021.03.24. 1심 무죄 · 2022.01.27. 2심 무죄 · 3심 진행 중	-	2018.12.17. 정직 3개월 2019.01.11. 징계불복소 송 (사건진행중)
심상철	서울 고등법원장	· 2023-현재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 2023 정년퇴임 · 2017-23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원로법관)	법원행정처 요구로 자동배당 원칙을 어기고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을 지정 배당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	-
성창호	서울중앙지 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2023-현재 법무법인(유) 공장 변호사 · 2023 명예퇴직 · 2022-23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2019-22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정운호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수사 대상 현직 판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영장청구서 등을 신광렬 판사에게 전달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 2019.03.05. 불구속기소 · 2020.02.13. 1심 무죄 · 2021.01.29. 2심 무죄 · 2021.11.25. 3심 무죄	-	2022.01.10. 무혐의

이름	당시 직책	이후 경력 및 현 직책 (2025.11.12. 기준)	혐의	형사 재판 경과	탄핵 경과 ⁴⁰	징계 경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2025-현재 청주지법 부장판사 · 2021-25 대전지법 부장판사 · 2019-21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2022.01.10. 견책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2025-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2-25 변호사 신광렬 법률사무소 · 2022 퇴직 · 2020-22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겸임) · 2018-22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운호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계획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2019 시민사회 탄핵명단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음	2022.01.10. 감봉 6개월
시진국	법원행정처 기획재1·제2심의관	·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 2020 퇴직 · 2018-20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상고법원 설치를 청와대에 설득하기 위해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를 정리한 문건 작성 혐의	-	2019 시민사회 탄핵명단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음	2018.12.17. 감봉 3개월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2025-현재 변호사 심준보 법률사무소 · 2025 명예퇴직 · 2017-25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교조 재판 진행 경과 등을 담은 문건 작성, ‘정운호 게이트’ TF 팀장 활동,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가담 혐의	-	-	2018.12.17. 무형의
유해용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 2021-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8-21 변호사 유해용 법률사무소 · 2018 퇴직 · 2017-18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종현과 함께 ‘비선 의료진’ 병원장 특허소송 관련 진행 중인 재판 경과·계획 문건 등을 청와대에 누설하고, 퇴직 당시 대법원 판결문 초고, 하드디스크 등 무단 반출 및 폐기하는 등 직권남용, 비밀누설,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 2019.03.05. 불구속기소 · 2020.01.13. 1심 무죄 · 2021.02.04. 2심 무죄 · 2021.10.14. 3심 무죄	-	-
윤성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 2022-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 2019-22 법무법인(유) 클래스 대표변호사 · 2019 퇴직 · 2018-19 광주지법 법원장 · 2016-18 서울고법 부장판사	통진당 재산압류사건 재판개입 지시·상부(임종현) 보고, 양승태에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검토문건 보고	-	2019 시민사회 탄핵명단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음	-

이름	당시 직책	이후 경력 및 현 직책 (2025.11.12. 기준)	혐의	형사 재판 경과	탄핵 경과 ⁴⁰	징계 경과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2022-현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구성원변호사 · 2021-22 법률사무소 BLP 공동대표변호사 · 2019 법관 재임용 심사 탈락 · 2017-19 서울고법 부장판사	△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 통진당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 개입, △ 파견법관 통한 현재 내부 정보 수집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 2019.03.05. 불구속기소 · 2021.03.24.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022.01.27. 2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3심 진행 중	2018 시민사회 탄핵명단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음	2017.08.10. 감봉 4개월 2018.12.17. 정직 6개월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장	· 2021-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변호사 · 2021 임기만료(재임용 불희망) · 2020-21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겸임)	△ 법원행정처 정책에 비판적이던 판사 모임(‘인사모’) 와해 시도, △ 국회의원 피고인인 사건의 결론 관련 재판부 심증 파악 지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2019.03.05. 불구속기소 · 2021.03.24. 1심 선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022.01.27. 2심 선고 벌금 1,500만원 · 3심 진행 중	2018 시민사회 탄핵명단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음	2018.12.17. 정직 6개월 2019.01.16. 징계불복소송 (사건진행중)
이진만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2024-현재 법무법인 송우 대표변호사 · 2020-24 변호사 이진만 법률사무소 · 2020 퇴직 · 2018-20 서울고법 부장판사 · 2016-18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통진당 소송 개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통진당TF’ 팀장, 통진당 관련 소송 검토 지시·문건 작성·보고	-	2019 시민사회 탄핵명단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음	-
이태종	서울서부 지방법원장	· 2025-현재 법무법인 삼양 대표변호사 · 2023-25 법무법인 황앤씨 대표변호사 · 2023 퇴직 · 2020-23 수원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겸임) · 2018-20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관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저지를 위해 임종헌과 공모하여 영장청구서 등 자료를 이상훈 기획법관 등을 통해 법원행정처로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2019.03.05. 불구속기소 · 2020.09.18. 1심 무죄 · 2021.08.19. 2심 무죄 · 2021.12.30. 3심 무죄	-	-
임성근	서울중앙지 법 형사수석부 장판사	· 2022-현재 법무법인(유) 해광 대표변호사 · 2021 임기만료(재임용 불희망) · 2020-21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겸임) · 2016-20 서울고법 부장판사	△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 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집회 사건 판결 이유 수정·삭제, △ 공판절차 외부 결정된 약식사건 재검토 후 약식명령 발령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2019.03.05. 불구속기소 · 2020.02.14. 1심 무죄 · 2021.08.12. 2심 무죄 · 2022.04.28. 3심 무죄	2019 시민사회 탄핵명단 · 2021.02.01. 탄핵소추안 발의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 2021.02.04.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 2021.10.28.	2018.10.04. 견책 2018.10.17. 징계불복소송 2025.03.21. 소취하 / 견책 확정

이름	당시 직책	이후 경력 및 현 직책 (2025.11.12. 기준)	혐의	형사 재판 경과	탄핵 경과 ⁴⁰	징계 경과
					현재, 탄핵심판청구 각하	
정다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심의관	· 2021-현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2021 명예퇴직 · 2019-21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 2017-19 울산지법 부장판사 · 2015-17 서울중앙지법 판사	△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해 사법부가 노력해 왔다는 내용의 ‘현안 관련 말씀자료’ 문건 등 작성, △ 청와대와의 비공식 대화 채널 가동 등 전략을 짜는 문건 발송한 혐의	-	2018 시민사회 탄핵명단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음	2018.12.17. 감봉 5개월
조한창	서울행정법 원 수석부장판 사	· 2025-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21-24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 2021 퇴직 · 2016-21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종현으로부터 ‘통진당TF’ 작성 문건을 받아 해당 재판부에 전달, 이명박 대통령 비판 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판사의 취소소송을 빨리 종결하라고 재판부에 요구	-	2019 시민사회 탄핵명단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음	-
최희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 2024-현재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22-24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파트너 변호사 · 2022 퇴직 · 2021-22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2018-2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근혜 탄핵심판·한일협정 관련 소송 등 현재 내부 정보 300건 이상 대법원에 보고	-	2019 시민사회 탄핵명단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음	-
홍승면	대법원 선임·수석 재판연구관	· 2024-25 변호사 홍승면 법률사무소 · 2024 명예퇴직 · 2016-24 서울고법 부장판사 · 2016-17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강제징용 손배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 수령,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가담 혐의	-	-	2018.12.17. 무혐의

3. 김영수·조희대 대법원의 사법개혁 관련 주요 현황

-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 참여연대와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등 핵심 개혁 과제 이행을 요구함. 하지만 김영수 대법원은 최소한 자문회의를 가동하고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등을 추진하며 일부 사법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 입법이 아닌 규칙 개정을 통한 변화였기에 그 성과조차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한편 국회는 사법농단 이후 미이행된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관련 논의를 사실상 진행하지 않음.
- 조희대 대법원 출범 이후 사법개혁 흐름은 노골적인 후퇴로 전환함. 김영수 대법원 시기 꾸준히 운영돼 온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방치하더니,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음.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추천’ 형식만 남긴 채 투표 없이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임명하는 퇴보한 법원장 보임 절차로 변경함. 법원행정처 상근법관도 증원함. 사법개혁 역행의 조짐을 보이는 조희대 대법원과 남은 과제를 외면한 채 사법개혁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국회는 사법개혁 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날짜	주요 내용
2018-03-16	김영수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훈훈 전 대법관) 발족 - 위원장 1명, 위원 10명(법관 2명) ⁴¹ , 전문위원 25명(법관 13명), 운영지원단 6명
2018-07-17	사법발전위원회,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설치, 상근 법관을 두지 않을 것 등을 권고
2018-09-20	김영수 대법원장,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담화문 발표.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 1을 줄이고 임기 내 최대한 빨리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함
2018-12-12	김영수 대법원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전달.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법원사무처의 신설을 제안했으나 법원사무처 비법관화 강제 규정은 제외됨
2019-01-29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직 폐지, 사법정책총괄 심의관 산하 심의관과 담당관 규정 폐지함
2019-02-25	법관 정기인사 실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0명 감축 - 기획조정심의관 2명, 사법지원심의관 1명, 사법정책총괄심의관 1명, 사법정책심의관 3명, 정보화심의관 1명, 인사심의관 1명, 윤리감사심의관 1명 감축함. 대체된 보직은 일반직 부이사관, 서기관 등으로 임명
2020-02-06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6명 감축 - 공보관 1명, 기획조정심의관 1명, 국제심의관 1명, 민사지원제1심의관 1명, 형사지원 심의관 1인, 정보화심의관 1명, 인사심의관 1명 등 7명을 감축하고,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에 법관 1명을 보임함

⁴¹ 고미경 한국여성정의전화 상임대표,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홍엽 성균관대 법전원 초빙교수, 박성하 대한변협 법제이사,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날짜	주요 내용
2021-02-22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5명 감축 - 전산정보관리국장 1명, 기획조정심의관 1명, 특별지원심의관 1명, 사법등기심의관 1명, 인사심의관 1명을 감축함
2022-02-21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명 증원 - 사법등기국장 1명을 감축하고, 인사심의관 1명,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심의관에 법관 1명을 보임함
2023-02-20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인사 실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명 증원 - 인사제도연구심의관(신설) 1명을 증원함.
2023-12-08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2024-02-19	법관 정기인사 실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7명 증원 - 사법정보화실(신설) 실장 1명과 정보화기획심의관 1명, 공보관 1명을 법관으로 보임하고, 인사지원심의관 1명, 형사지원심의관 1명, 특별지원심의관 1명, 인사심의관 1명을 증원함
2024-06-11	법원행정처,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력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 다시 추진 중에 있다고 알려짐 ⁴²
2024-06-12	조희대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제3기) 10년만에 부활시킴. 사법행정자문회의(김명수 대법원장 시기 도입) 사실상 폐지 ⁴³ -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 기구로,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임.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함
2024-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일원화 후퇴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악안 상정 -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64), 3년(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12)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현행 5년보다 더 강화된 법조경력제가 도입되는 순간, 더 이상 경제적 성취 추구에 답답은 무직한 공익추구자로서의 법관은 찾기 어렵게 될 것"이라 주장함. 개인 의견을 전제로 여야 개정안 중 최소경력을 더 낮은 3년안을 더 선호한다고 밝힘 - 참고. [참여연대 성명]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 중단하라(2024-09-06)
2024-09-26	법조일원화 후퇴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재석 24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2인, 기권 12인) - 해당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2024년 10월 16일 시행 - 참고. [시민사회 기자회견]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2024-09-26)
2024-11-18	법원장후보 추천제(김명수 대법원장 시기 도입) '추천'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될 것이라 알려짐 ⁴⁴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힘. 해당 절차는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은 후,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임. 추천 형식은 살렸으나 투표 없이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임명하는 셈
2025-02-10	법관 정기인사 실시. 법원 이원화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지방법원장 보임제도 신규 마련 - 고등법원 부장판사 6명, 고등법원장 신규 보임. 고등법원 부장판사 5명, 지방법원(3곳)과 전문법원(2곳) 법원장 보임.
2025-02-24	법관 정기인사 실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2명 증원 - 기획조정실에 국제교류추진단(신설) 단장 1명을 법관으로 보임하고, 사법정책심의관 1명을 증원함

⁴² [단독] 판사 임용 최소경력 '10년 이상→5년 이상' 다시 시도하는 조희대 대법원, 경향신문, 2024-06-11.

⁴³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사법개혁안으로, 사법행정에 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원장 자문기구임. 대법원장을 비롯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법관위원 5인과 비법관 위원 4인으로 운영되는 등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의 일부 법관들에 의한 정책결정구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시절 제29차 회의(2023년 9월)를 끝으로 개최되지 아니함.

⁴⁴ 김명수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 조희대 대법원 사실상 폐지, 연합뉴스, 2024-11-18.

4.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1심 재판 결과 요약⁴⁵

I. I. 행정부 상대 이익 도모 여부			
①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양승태 2013. 9. 30.자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외 관계(대외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양승태 2013. 11. 8.자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대외비)’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 재판연구관 ⁴⁶ 에게 2013. 11. 8.자 보고서 전달을 지시함		
	양승태 2013. 12. 18.자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양승태 2013. 12. 19.자 ‘장래 시나리오 축약’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X
	양승태 주심 대법관 ⁴⁷ 에게 청구기각 의견을 전달하여 판결을 번복하고 재판절차를 지연시키게 함		■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 X ■ 직권행사 X ■ 남용 X ■ 권리행사방해 및 의무 없는 일 X
	양승태■박병대 2014. 11. 10.자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관련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양승태■박병대 2014. 12. 13.자 ‘강제징용 사건 외교부 의견 반영 방안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박병대 2015. 3. 26.자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양승태■박병대 2015. 7. 20.자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양승태 피고측 변호사 ⁴⁸ 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합 회부 계획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	2015. 5.~11.경 임종현의 누설 행위	■ 공모 X	
	2015. 5. 및 11.경 피고인 양승태의 누설 행위	■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내지 재판의 결론에 대한 심증은 ‘직무상 비밀’ X ■ ‘외교부 의견서만 제출되면 청와대 및 외교부 등 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심리하겠다’는 발언의 내용은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 X ■ ‘누설’ X	

⁴⁵ 양승태·박병대·고영한 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24.1.26. 선고 2019고합130)에 대한 법원의 보도자료를 요약·재구성함.

⁴⁶ 황진구

⁴⁷ 김용덕

⁴⁸ 한상호

	양승태■박병대 2015. 7. 2.자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추진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 외교부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합 회부 계획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	■ 공모 X ■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은 ‘직무상 비밀’ X ■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기초로 청와대 및 외교부 등 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발언의 내용은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 X
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양승태■박병대 2014. 12. 3.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 정지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③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양승태■박병대 2015. 2. 8.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박병대 2015. 2. 9.자 ‘국정원 선거개입(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X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박병대 2015. 2. 10.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박병대 재판연구관에게 2015. 2. 9.자 보고서 전달 지시	■ 일반적 직무권한 X ■ 직권행사 X ■ 공모 X

I. 2. 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여부(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		
박병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신속종결 의견 전달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사실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기일추정 이유 확인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기일 진행 의견 전달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박병대 서기호 사건 담당 재판장 ⁴⁹ 에게 사건의 신속 종결을 지시함		■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 X ■ 직권행사 X ■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박병대 2015. 4. 26.자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對국회 전략’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박병대 2015. 6. 30.자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I. 3.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시도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①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헌법재판관 보고서 수집·보고 지시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 ■ 의무 없는 일 ○ ■ 공모 X
	재판관들에 대한 헌법재판연구관들의 보고 내용 등 수집·보고 지시		
	평의에서의 재판관들의 의견 수집·보고 지시		
	평의 결과 수집·보고 지시		
	기일추정 이유 확인을 지시함		
	결정문 초고 수집·보고 지시		
	2015. 9. 15. 이전 전달한 정보		■ 인과관계 X ■ 공모 X
	법원의 재판권이나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사건에 관한 정보		
이규진이 요청하지 않은 사건 관련 정보			
②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양승태 ■ 박병대 2015. 11. 8.자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헌성’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③ 법률신문 대필 기사 게재	양승태 ■ 박병대 2016. 3. 24.경 ‘박한철 헌재소장, 거침없는 발언에 법조계 술렁’ 기사 초안의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④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양승태 ■ 박병대 사법정책실 심의관 ⁵⁰	2015. 4. 12.자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 대책(대외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 ■ 의무 없는 일 ○ ■ 공모 X
	양승태 ■ 박병대	위헌제청결정 직권취소 및 재결정 의견	■ 재판개입 ○

⁴⁹ 박연욱

⁵⁰ 문성호

	담당 재판장 ⁵¹	전달	■ 일반적 직무권한 X ■ 직권행사 X ■ 남용 X ■ 권리행사방해 O ■ 공모 X
		검색 제외 요청 공문 작성 및 발송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재판장의 직무 X ■ 직권행사 X
		검색 제외 요청 공문에 대한 협조결재를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X ■ 권리행사방해 및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 ■ 박병대 정보화심의관 ⁵² 에게 전산상 결정문 검색 제외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O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⑤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양승태 ■ 고영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⁵³ 에게 매립지 귀속 관련 사건 조기 선고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보고할 것을 지시함		■ 재판개입 O ■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 X ■ 재판연구관의 조사·연구 업무에 대한 직무권한 X ■ 직권행사 X ■ 남용 X ■ 주심 대법관들의 재판권 행사 방해 X ■ 재판연구관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및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 ■ 고영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⁵⁴ 에게 조기 선고를 위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양승태 ■ 고영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⁵⁵ 에게 김소영 대법관 주심 사건에 대한 조기 선고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함		

I. 3.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시도 - 통합진보당 관련		
양승태 ■ 박병대 행정소송 대응TF를 통한 구체적 판단 방법 수립 지시	2015. 1. 7.자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2014. 12. 28.자 '헌재 관련 TF 검토보고서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2014. 12. 28.자 '통진당 해산 관련 언론 동향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2014. 12. 29.자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보고서(요약)'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⁵¹ 염기창

⁵² 이은상

⁵³ 김현석

⁵⁴ 박찬석

⁵⁵ 박찬석

	2015. 1. 13.자 '통진당 행정소송 – 소송요건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2015. 1. 23.자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보고 (요약)'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2015. 1. 26.자 '통진당 지방의원 현황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2015. 2. 6.자 '통진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2015. 1. 24.자 '헌재 관련 TF 검토 보고서 – 헌재결정의 효력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2014. 12. 29.자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2015. 1. 22.자 '통진당 행정소송 – 처분성 및 본안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양승태 ■ 박병대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⁵⁶ 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게 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 ■ 전달한 사실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재판장 ⁵⁷ 에게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검토하게 함	■ 일반적 직무권한 X ■ 직권행사 X ■ 남용 X ■ 검토한 사실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 ■ 박병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전주지법 재판 개입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 ⁵⁸ 으로 하여금 심증 확인 및 법리 전달하게 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 ■ 의무 없는 일 ○ ■ 공모 X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 ⁵⁹ 으로 하여금 자료 전달하게 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 ■ 자료 전달 사실 인정 X
	2015. 9. 15.자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재판장 ⁶⁰ 에게 법리를 전달하여 검토하게 함	■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 X ■ 직권행사 X ■ 남용 X ■ 재판장에 영향 X ■ 권리행사방해 및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⁵⁶ 조한창

⁵⁷ 반정우

⁵⁸ 심경

⁵⁹ 심경

⁶⁰ 방창현

	재판장 ⁶¹ 에게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여 선고기일을 연기하게 함	■ 요청 사실 인정 X ■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 X ■ 직권행사 X ■ 권리행사방해 및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박병대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 자료의 작성 및 행사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 문건을 작성하고 해당 문건을 헌법재판소 및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등에 행사함	■ 공문서 O ■ 일부부분 허위사실 O ■ 작성 - 문건 O - 수정된 전자파일 X ■ 행사할 목적 - 헌법재판소 상대 X - 청와대 상대 O ■ 행사 X ■ 공모 X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개입	양승태■박병대 2015. 11. 12.자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행정 11. 12. 선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O ■ 의무 없는 일 O ■ 공모 X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장 ⁶² 에게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및 자료를 검토하게 함	■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 X ■ 직권행사 X ■ 남용 X ■ 권리행사방해 및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법 재판 개입	양승태■박병대 재판장 ⁶³ 에게 합의를 번복, 청구기각의 결론을 설득하게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선고기일을 추정하도록 함	■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 X ■ 직권행사 X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또는 재판권 행사 방해 여지 有 ■ 남용이 없으므로 인과관계 X ■ 공모 X
	양승태■고영한 재판장 ⁶⁴ 에게 법원행정처의 판단 방법과 의견을 검토하게 함	■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 X ■ 직권행사 X ■ 남용 X ■ 재판장에 영향 X ■ 권리행사방해 및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고법 전주부 재판 개입	양승태■고영한 재판장 ⁶⁵ 에게 법원행정처의 판단 방법을 검토하게 함	■ 재판장에게 전화하거나 문건을 전달한 사실 인정 X ■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 X

⁶¹ 방창현

⁶² 이동원

⁶³ 박강희

⁶⁴ 박길성(2016.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제1행정부 재판부 구성 변경됨)

⁶⁵ 노정희

			■ 직권행사 X ■ 남용 X ■ 권리행사방해 및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고영한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지시 및 재판 개입	2016. 6. 8.자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선임재판연구관 ⁶⁶ 에게, 총괄재판연구관 ⁶⁷ 으로 하여금 보고연구관 지정 시 이를 알려주도록 하라고 지시함		■ 지시 사실 X ■ 직권행사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선임재판연구관 ⁶⁸ 으로 하여금, 수석재판연구관 ⁶⁹ 에게 2016. 6. 8.자 보고서를 전달할 것을 지시함		■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 X ■ 직권행사 X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선임재판연구관 ⁷⁰ 으로 하여금, 담당 재판연구관 ⁷¹ 의 구체적 보고 내용 및 향후 처리 일자 등을 파악하여 이규진에게 보고하게 함	전합보고사건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및 2016. 10. 중간보고를 할 예정인 점을 전달한 부분	■ 지시사실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행정소송 상고사건의 검토 내용을 전달한 부분	■ 지시사실 X ■ 의무 없는 일 O ■ 지시사실이 없으므로 인과관계 X ■ 공모 X
통진당 잔여재산 보전처분 검토 지시 및 재판개입	박병대 2013. 12. 23.자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박병대 가압류 사건 법관들에게 자료를 받아 검토하게 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X ■ 권리행사방해 및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II.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① 법관 인사 관련	물이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보고서 (2013년~2017년)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X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정기인사 대상 법관 참고사항 보고서 (2014년~2017년) 작성을	

⁶⁶ 김현석

⁶⁷ 민성철

⁶⁸ 김현석

⁶⁹ 유해용

⁷⁰ 김현석

⁷¹ 강우찬

	지시함		
	인사안 마련을 지시함 (김○○, 최○○, 김○○, 송○○, 유○○, 마○○, 문○○, 성○○ 판사)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의 행사 ▲ ■ 남용 또는 의무 없는 일 X
	위 8명의 법관으로 하여금 부당한 인사조치로 전보된 각 법원에서 근무하게 함	피고인 양승태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X ■ 권리행사방해 및 의무 없는 일 X
		피고인 박병대 피고인 고영한	■ 일반적 직무권한 X ■ 직권행사 X ■ 남용 X ■ 권리행사방해 및 의무 없는 일 X
②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관련	양승태 ■ 박병대 2015. 8. 24.자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방안(對外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 ■ 고영한 2016. 3. 10.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X ■ 법관의 표현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 침해하여 의무 없는 일 ○ ■ 공모 X
	양승태 ■ 고영한 2016. 3. 25.자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 ■ 법관의 표현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 침해하여 의무 없는 일 ○ ■ 공모 X
	양승태 ■ 고영한 2017. 1. 24.자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양승태 ■ 고영한 2017. 2. 13.자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 공지글 작성 지시		
	양승태 ■ 고영한 법관 100명으로 하여금 소속 연구회를 탈퇴하게 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 ■ 고영한 성명불상 법관(순번 28번)으로 하여금 소속 연구회를 탈퇴하게 함		■ 공소사실 불특정 → 이유 공소기각
③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와해 시도 관련	양승태 ■ 박병대 2015. 2. 14.자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 ■ 남용 X ■ 법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여 의무 없는 일 ○ ■ 공모 X
	2015. 2. 27. 및 2015. 3. 1.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내 ‘이시아..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 제목의 자진삭제 제안글		■ 일반적 직무권한 ○ ■ 직권행사 X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 ■ 박병대 2015. 3. 2.자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양승태■박병대 2015. 3. 3.자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양승태■박병대 2015. 7. 26.자 ‘익명카페 설득논리 및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박병대 인천지방법원장 ⁷² 으로 하여금 카페활동을 위촉시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카페 운영자인 홍예연 판사에게 전달하고, 홍예연 판사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게시하도록 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완성 X ■ 공모 X
④ 대한변협 등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 검토 및 실행	양승태■박병대 2014. 8. 25.자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박병대 2014. 9. 1.자 ‘대한변협 압박 방안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양승태■박병대 2014. 9. 29.자 ‘변호사 평가제도 시행 방안’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양승태■박병대 2015. 1. 23.자 ‘대한변협 신임 회장 대응 및 압박 방안’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양승태■박병대 2015. 4. 17.자 ‘대한변협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⑤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양승태■박병대 2015. 9. 22.자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박병대 2015. 10. 14.자 ‘적시처리 중요사건 활성화 방안 검토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 포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⑥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개입	양승태■고영한 2016. 3. 28.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Ⅲ. 부당한 조직 보호		
①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 비위 관련 직무유기 및 재판 개입	양승태■박병대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업무를 유기함	■ 작위의무 발생 X ■ 적절한 조치 O ■ 양승태의 인식 정도: 2015. 9.경 인지 X, 2016. 2.경 조치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 X
	양승태■고영한 전 부산고법 판사의 추가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업무를 유기함	■ 작위의무 발생 X ■ 의혹 은폐·축소 여부 X ■ 양승태■고영한의 인식 정도: 구체적 작위의무 발생하였다는 사정

⁷² 김동오(당시 홍예연 판사가 인천지방법원 소속이었음)

			인식 X
	양승태■고영한 부산고등법원장 ⁷³ 을 통해 정진용 등 뇌물 사건 관련 재판장 ⁷⁴ 에게 변론재개, 추가 기일진행, 선고기일 연기를 하게 함		- 재판개입 O - 부산고등법원장이 피고인 고영한의 요청을 김주호에게 전달한 사실 인정 X -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 X - 권리행사방해 및 의무 없는 일 X - 인과관계 X - 공모 X
③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및 영장재판 개입	양승태■고영한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게 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X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고영한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비리 수사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함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④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	양승태■고영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 정보 수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게 함	서울서부지방법원장 ⁷⁵	임종현의 지시 사실 인정 X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 ⁷⁶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양승태■고영한 ⑤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	법관 비리 관련 수사 확대 저지 등에 대한 영장재판 종국 전인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입수하고 그 사본을 송부하게 함	박선숙, 김수민(2016. 7. 8.자), 최경희, 우병우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X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김수천, 최서원, 김경숙, 이재용	- 일반적 직무권한 O - 직권행사 O - 남용 X - 의무 없는 일 X - 공모 X

Ⅳ. 기타			
양승태■박병대 ①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을 기망하여 정부 예산안을 편성 받음	공보관실 존재 여부 관련	- 위계 인정 X - 예산편성이 위계로 인한 것 X - 공모 X

⁷³ 윤인태

⁷⁴ 김주호

⁷⁵ 이태종

⁷⁶ 나상훈

관련		사용주체, 사용용도 관련	■ 위계 인정 O ■ 예산편성이 위계로 인한 것 X ■ 공모 X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을 기망하여 정부 예산안을 편성 받아 이를 피고인 양승태의 격려금으로 사용함	국고손실죄의 경우	■ 회계담당관의 예산의 적정 편성·신청·집행 임무 인정 X ■ 공모 X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 기초실장의 예산의 적정 편성·신청 임무위배는 인정되나 인과관계 X ■ 기초실장의 예산의 적정 집행 임무 인정 X ■ 재산상 이익 취득 및 불법이득의사 X ■ 공모 X
	편성 받은 예산을 마치 공보관실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처럼 디브레인 상 지급결의서에 허위 입력하고, 관서운영경비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공보판사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수령증을 징구함		■ 공모 X
박병대 ② 형사사법절차전 자화촉진법위반	사적인 목적으로 형사사건 사건정보 및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열람함		■ 법리상 권한 없이 사용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사용 인정 X

토론회 자료집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공동주최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행일 2025. 11. 20.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담당 김봄빛나래 참여연대 간사 02-723-0666

jw@pspd.org

장범식 민변 변호사 02-522-7283

mjc@minbyun.or.kr

※ 본 자료는 [참여연대](#)·[민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